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29
----------	------

2018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의외 10명
- 나. 제 안 일 : 2018년 1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18년 1월 26일
- 라. 상 정 일 :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가. 제안 이유

- 청년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안 제5조).
- 청년공간의 민간에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청년의 활동 및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함.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 청년공간의 이용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음.
제6조(위탁운영 등)	-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현재(2018년 1월 기준), 서울시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은 무중력 지대 G밸리, 대방 등 9개소이며, 자세한 운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8년도 추가 조성 예정 : 무중력지대 강남, 광진, 관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시설) 현황〉

〈2018. 1. 현재〉

연번	공간명	위치	주요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수탁기관/ 수탁기간	민간 위탁금 (백만원)
1	무중력 지대 G밸리	금천구 가산동 371-28	- 청년대상 커뮤니티 조성 및 확대 구축 - 청년단체 협력을 통한 청년 문제 발굴 및 해결 - 청년들의 역량개발 사업 -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대책	청년단체 및 지역청년, 지역주민 등	8:00 ~ 22:00	프로젝트 노아 /2017.1.1.~ 2019.12.31	474
2	무중력 지대 대방	동작구 대방동 14-14			(주)오픈놀 /2018.1.19~ 2019.12.31	438	
3	무중력 지대 서대문	서대문구 홍제동 26-1, 294-46			(주)소셜아트플래툰 /협약체결일~ 2019.12.31	435	
4	무중력 지대 양천	양천구 목동 404-1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양천상상마당 /협약체결일~ 2019.12.31	320	
5	무중력 지대 도봉	도봉구 창동 3			도봉문화재단 /협약체결일~ 2019.12.31	320	
6	무중력 지대 성북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			협동조합 성북신나 /협약체결일~ 2019.12.31	370	
7	청년교 류공간	마포구 망원동 468-20	- 청년교류활성화 - 청년활동역량 강화 및 교육 홍보 - 청년교류공간 활성화 운영	전국 청년단체 및 청년 등	24시간 운영	(주)오픈놀 /협약체결일~ 2019.12.31	498
8	청년 허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1층)	- 청년커뮤니티 지원, 역량강화,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연구 등	청년, 일반시민	10:00 ~ 22:0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8.1.1.~ 2020.12.31.	3,749
9	청년청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2동	- 청년활동공간 운영 및 지원	청년단체, 일반시민	10:00 ~ 21:00	시 직영	130

○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청년공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청년기관”, “청년시설” 및 “청년공간”의 관계 및 정의의 모호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이 아닌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과 ‘청년공간’의 정의(안 제2조) 그리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의 ‘청년공간’ 정의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례(‘청년공간’, ‘청년시설’, ‘청년기관’) 정의 규정의 상충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조례명	정의	비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5호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조 (2017년 12월 15일 발의)	제18조(청년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고 한다)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청년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년공간의 안정적 운영 등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수정안 예시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u>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u>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u>말한다.</u>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년공간은 <u>별표 1과 같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은</u>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u>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제2조 관련)

명칭	위치
무중력지대 G밸리	금천구 가산동 371-28
무중력지대 대방	동작구 대방동 14-14
무중력지대 서대문	서대문구 홍제동 26-1, 294-46
무중력지대 양천	양천구 목동 404-1
무중력지대 도봉	도봉구 창동 3
무중력지대 성북	성북구 동선동5가 147-10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망원동 468-20

2) 청년공간의 사용 등(안 제5조)

- 안 제5조제2항은 청년공간 이용자(「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1)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4항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안 제5조제2항은 청년공간의 이용자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로 규정(15세 이상 29세 이하)하고 있는바,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동 조항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의 ‘입주 대상자’(만19세~39세)의 범위간 상충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조례명	정의	비고				
<p>「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사용자</p>	<p>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p>*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table border="1" data-bbox="373 600 1286 1070"> <thead> <tr> <th data-bbox="373 600 831 640">「청년고용촉진 특별법」</th> <th data-bbox="831 600 1286 640">「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3 640 831 1070">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td> <td data-bbox="831 640 1286 1070"> <p>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td> </tr> </tbody> </table>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p>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p>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p>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제4항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p>	<p>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또한, 이용자 중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안 제5조 제2항제2호)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년공간의 정체성에 맞게 이용자 제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청년공간(무중력시대 대방) 현장점검(2017년 6월 9일) 결과, 동 시설 운영자는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는바, 이용자 제한 규정의 준수가능성 등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 청년공간의 이용자를 “서울시 청년”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교류공간은 전국 및 국외 청년 이용 시설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제9조2))하고, 사업 대상을 주민(제12조3))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이용범위를 서울시 주민이 아닌 국외 및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의 법령위배소지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년공간별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예정)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주 이용 대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 용 시 간	365일, 24시간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 ~일, 10:00~10:00
주 요 공 간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 숙박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 업 내 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2)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3)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청년공간의 위탁운영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년공간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명확한 민간위탁 운영근거가 미비했는바, 안 제6조는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공간의 민간위탁 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4)를 제시하여왔으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조항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민간위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시된바 있음.

○ 다만,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법률유보)하여야 하는바,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미비함에도 민간위탁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의적인 행정집행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